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근로자 및 사업주·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, 고용노동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·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재원으로 하고,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(법률 제17189호, 공포 2020. 3. 31. 공포)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, 사업계획서 및 예·결산서의 제출,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금의 지급 관할 및 절차 구체화(영 제2조)

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

나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및 필요서류 규정(영 제3조)

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손익계산서, 자금계획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다. 결산서 제출 시 필요한 세부 서류 규정(영 제4조)

교육원이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, 해당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,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, 그 밖의 결산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라. 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영 제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

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
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 (출연금의 지급) ① 정부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
고용노동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
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
이를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 대상이 되
는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
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분기별

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3조 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정대차대조표
2. 추정손익계산서
3. 자금계획서

제4조 (결산서의 제출) 교육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2.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3.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
4. 그 밖의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

제5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	200	300	5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89